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9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안호영 · 김주영 · 이성윤
윤준병 · 이용우 · 박 정
전진숙 · 장철민 · 김태선
박희승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 고용 증진을 위한 법령들은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하는 지역고용 정책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은 중앙 주도의 한계, 지역 특성 반영의 어려움,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및 협업 체계 미흡 및 재정지원 안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프라 및 정책수단 등이 부족하여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중앙이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지원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역 맞춤형 지원, 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

기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대한 지정 및 선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며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고용 활성화”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며, 지역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고용안정, 경력개발, 노동환경 등 일자리 질의 개선 등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지역 주도의 사업을 말한

다.

3. “시·도”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4.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지역의 주된 사업 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역 고용사정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고용위기지역”이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고용재난지역”이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제21조에 따라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및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

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노동계,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절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고용 현황 및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3.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도 정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양질의 지역일자리 대책의 수립·공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종합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일자리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과 그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할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지역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일자리 대책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제언을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 구조나 경제권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둘 이상의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지역일자리 대책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 내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및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자원 배분·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해당 시·도의 조치계획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평가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장인 경우에는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4. 지역고용노동 및 인력양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 단체 등 지역고용노동 관련 단체의 대표

6. 지방자치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도 교육청 등에서 지역고용노동 또는 인력양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지역고용인적자원협의회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협의회

⑤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이하 “시·군·구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심의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권이나 산업기반 등이 인접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 심의회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군·구 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협의회(이하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

2.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 차관

3.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4.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③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3조에 따른 초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 고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등 지역고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복지 등 지역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방일자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고용 활성화 지원

제11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시·군·구 간, 시·도 간 등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사업의 범위가 단일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고용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업
2. 지역의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급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3. 지역의 청년·여성·고령자·비정규직 등 대상별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 생활 안정 지원 등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 증진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산업·지역 간 근로자 이

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의 구직자·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 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에 관한 사업
7. 지역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고용환경의 개선, 근무형태의 변경, 인력의 재배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협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소관 사업의 지원 절차, 지원 기준 등을 지역별로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초광역 단위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단일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광역 단위의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고용의 현황 및 동향 조사·분석
2.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수립 및 추진실적 공표 지원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및 운영 지원
4.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의 개발 및 시행 지원
5. 지역 내 인력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지역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 나.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 다. 지역 내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 라.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 마.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사업 수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행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7. 지역 내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②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은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제4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정 또는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이하 “시·군·구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지원기관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시·군·구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원기관의 기능,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 제6호에 따라 시·도가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가 실시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시·군·구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평가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군·구 평가를 위하여 관계 시·군·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규모·보조비율 우대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차등 배분
4.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의 산업 및 고용 여건 등에 적합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고용조정 지원

제19조(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지역의 주된 사업 내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관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지정기간, 지원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고용위기지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대규모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정범위를 지역 내 특정 업종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개월마다 고용위기지역의 운영 현황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조치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중이더라도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신청, 지정절차,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지원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고용재난지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선포”로 본다.

제4장 지역고용 활성화 기반 조성

제22조(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수집·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산업 및 고용 정보 제공
2.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 평가
3. 제16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등의 평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8. 장애 정도
9.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0.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1.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2.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13.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와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의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여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 및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에 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행기관이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전산망과 연계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행기관 및 업무담당자별

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제22조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특성
2.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⑤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등 지역고용 활

성화 사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수행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위임·재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제16조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3. 제22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제25조(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를 「고용정책 기본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대책 성과 평가 지원
2.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개발·운영 지원
3. 제14조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운영실태 평가 등 지원 및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정보교류 등 업무협력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지원
5. 제18조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
6.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운영 등 지원
7. 제22조에 따른 지역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혁신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중 “특별 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로 한다.

-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둔다.

제32조의 제목 중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을 “업종별 고용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또는 지역에”를 “업종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에”로, “업종 또는 지역을”을 “업종을”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로 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을 “지역 및 산업부 문별 인적자원개발을”로 한다.

③ 법률 제21133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3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4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를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을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⑧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중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를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제3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3조(지역일자리 창출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공표된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은 이 법에 따라 수립·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조정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32조의2에 따라 행하여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 고용재난지역 선포 및 해제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